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예 비 전 력 관 리 업 무 담 당 자 선 발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응시율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응시자격 확대(안 제5조, 별표 1)

- 1)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에서 육군(의정과), 해군(의무과)가 포함되고, 공군은 누락되어 공군 의무과 중 접미어 행의 의무특기를 추가
- 2)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의 7급 응시자격을 현역복무기간 7년에서 6년으로 완화

나. 응시원서 제출을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수임군부대장에서 면접을 희망하는 지역의 수임군부대장으로 변경(안 제7조)

다. 필요시 선발시험 순서 조정 근거 신설(안 제9조제2항)

- 1) 현재 단계별 순차적으로 선발시험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우발상황 발생시 탄력적 대응이 제한되므로, 필요시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발시험 진행을 위해 선발시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라. 응시자 편의 증대 및 시험 시행부대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선발

시험의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법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1) 수임군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국민체력인증제로 변경

2) 각 군별 건강관리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검사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민간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

마.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의 내용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1) 근무경력 중 보직경력 평가기준을 진급유형과 지휘관 직위 이수 여부에 따른 차등배점(1.5점~2.5점)에서 지휘관 직위 이수여부만으로 배점(이수자 2.5점, 미이수자 2.0점)을 조정하고, 예비군 중대장 보직경력에 해군 지휘관 직위 추가

2) 근무병과에서 배점을 전투병과와 그 밖의 병과로 구분(1점, 0.5점)하였으나 전투병과인 경우만 0.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전투병과에 해군 정보과, 해병대 기갑과, 정보과를 추가

3)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동원·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작전사령부 동원과 추가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증등급별(1~3급) 배점(1점~0.6점)에서

3급 이상 취득시 0.5점 가점 부여로 조정

5) 근무병과와 한국사능력시험을 심의평가요소로 조정하여, 심의평가 점수를 9점에서 11점으로 확대

바. 선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6조)

1)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대대장 이하 예비
군지휘관 및 군무원 선발시 위원장은 대령급으로 위원은 중령급
으로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1. 6. 4. ~ 7. 1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현역에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을 “부사관”으로, “있다”를 “있으며, 재임용 시 신분이 전환된 경우 이전 경력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무를”을 “면접을”로,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를 “군부대”로 한다.

제9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12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측정하며, 각 항목별 3등급 이상으로 합격으로 하되, 면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만 인정한다.

③국민체력인증제 시행 제한시 각 군 체력검정 방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 중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검사는”을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규정」의 검진기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총 3회의 범위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병원장”을 “검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9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점”을 “심의평가 11점, 상훈 2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8점”을 “9.8점”으로, “별표 7의2”를 “별표 7의 근무병과, 별표 7의2”로, “경력자”를 “경력,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로, “0.2점”을 “1.2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실”을 “사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처분이 말소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속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을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대장 이하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위원은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별표1, 5, 7, 7의2,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 별표 7의 제목 및 배점,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병과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육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병과[인사과(지휘관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정과 ○ 해군(해병대는 제외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본병과(조함과,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한다) ○ 해병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 공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 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의무 중 접미어 행만 해당한다)
예비전력 관리기구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장비·물자 관 리대의 장비관 리관 등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군의 기본병과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육군 의정과와 해·공군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 공군 군사특기 의무 중 접미어 행만 해당한다)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별표 5]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보직경력 평가기준

구분	보직경력	배점
예비군 연대장	- 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안보지원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사교육과정(6개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2.5점
	연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2.0점
예비군 대대장/ 예비군 훈련대 장/4급	- 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안보지원부대장 또는 지역안보지원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2.5점
	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2.0점
예비군 중대장 /5급	-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해군 함(정)장, 해상전담 감시대장 등 지휘관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안보지원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해군·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2.5점
	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2.0점
6급 이하	대위, 준사관, 부사관	2.5점

2. 복무경력 평가기준

가. 복무경력에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4.5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1)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5을 곱하여 산출한다.

2)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

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린다.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점수	0.01	0.03	0.04	0.05	0.07	0.08	0.09	0.10	0.12	0.13	0.14

[별표 7]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7항 관련)

구 분		병과
전투병과 (0.5점)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해군	함정과, 항공과, 정보과 및 해병대 보병과, 포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기갑과, 정보과
	공군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비고

- 전투병과 근무기간이 5년 이상(예비군지휘관 및 5급 이상), 3년 이상(6급 이하)인 경우 적용

[별표 7의2]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경력자 가점 적용 기준(제15조제7항 관련)

구 분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배 점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0.1점을 부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0.2점을 부여한다.
합참	작전기획부 동원소요과	
육군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지상작전사령부: 자원동원과, 예비군과 •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 • 수도방위사령부: 동원참모처 • 군단: 동원참모처 •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참모처,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 • 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 • 사단: 동원참모처, 예비군훈련대, 예비군감사실 • 연대: 동원과 • 대대: 동원과 • 舊1·3군사령부: 동원참모처	
해군 (해병 포함)	• 해군본부: 예비전력차장 소속과 • 작전사령부: 동원과 • 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진해기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예비군관리대 • 해병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 사단: 동원참모실, 예비군관리대 • 여단: 동원참모실 • 군수단본부: 동원과 • 교육훈련단: 동원예비군과, 동원지원단, 제16예비군관리대	
공군	• 공군본부: 동원과 • 27예비단	

[별표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7항 관련)

시험의 종류	인증등급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0.5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 ③ (생 략)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현 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와 <u>현역에서</u> <u>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u> <u>퇴역 부사관</u> 은 일반군무원 7급 에 응시할 수 <u>있다</u> .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부사관</u> ----- ----- ----- ----- <u>있으며, 재임용 시</u> <u>신분이 전환된 경우 이전 경력</u> <u>을 합산한다</u> .
1. · 2. (생 략) ⑤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선 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 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 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 여 <u>군무를</u> 희망하는 지역을 관 할하는 <u>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u>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 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 ----- ----- -- <u>면접을</u> ----- ---- <u>군부대</u> ----- ----- ----- ----- -----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시험의 구분) (생략)

<신설>

제12조(체력검정) 체력검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의 구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체력검정) ①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

-----.

<신 설>

③ 서류심사·체력검정·면접 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총 3회의 범위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국민체력인증제 시행 제한시
각 군 체력검정 방법 등으로 시
행할 수 있다.

③ -----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
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
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
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9점, 상
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 ③ (생략)

④ · ⑤ 삭 제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⑦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8.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 2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경력자 가점 적용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

④ -----
----- 검진기관의 장 -----

-----.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심의평가 11점, 상훈 2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 9.8점-----

----- 별표 7의
근무병과, 별표 7의2-----
-- 경력, 별표 9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

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3. (생략)

⑧ (생략)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표
9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
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
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단서 신
설>

----- 1.2절 -----.

1. -----

사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처분이 말소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 소속 대령
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 . 다만, 대대
장 이하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
당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위원
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위원은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
방부 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예비전력과	
연 락 처	(02) 748 - 5249